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• 의결

**안건번호** 제2023-013-162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학교법인 동은학원(법인등록번호: - )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3. 7. 26.

### 주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4,2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- 2. 피심인 산하 종합병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.
  - 가.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피심인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9조(안전 조치 의무)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,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
  - 나. 대표자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

다. 상기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

3. 피심인 산하 종합병원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
### 이 유

#### 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( )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, 이하 "보호법"이라 함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인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일반현황 >

<b>학교법인명</b> (법인등록번호)	<b>병원명*</b> (사업자등록번호)	설립일자	병원 대표자	상시 종업원수	<b>자본금</b> (억원)	<b>매출액</b> ('21년, 억원)

### Ⅱ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('21.12.24.)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1. 개인정보 유출 개요

### 가. 유출 규모 및 경위

- (유출 규모) 피심인 산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 '19.2월부터 '19.12월까지 2,366명의 환자정보\*가 유출되었고, 이중 진료과와 처방 코드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.
  - \* 성명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나이, 성별, 처방일, 처방의, **진료과**, 처방내역(수량, 용량, 횟수, 일수, **처방코드**)
  - (유출 경위) 외과 의국장이 다운로드한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거나, 제약사 직원이 외과 의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한 환자정보를 본인 이메일로 송부하였다.

### 나. 유출 경과 및 대응

일 시	유출 인지·대응 내용		
'21. 2월 ~ 5월	o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사항 비공개 공문을 접수 후 인지 및 미신고 o 경찰청의 1차 참고인(정보보호·시스템 담당 등) 조사		
'21.10월 ~ 11월	ㅇ 경찰청의 2차 참고인(병원장) 조사		
'21.12.23 ~ 12.31	ㅇ 경찰청 수사 결과 통보		
'21.12.24.	ㅇ 유출 신고		
'22. 2. 9. ~ 2.18.	ㅇ 유출 파일 확인 및 수령(경찰청 → 개인정보위 → 병원)		
'22. 2.17.	ㅇ 유출 통지(문자, 홈페이지 게시 등)		

### 2. 행위사실

### ○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- 피심인 산하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은 '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', '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'등 접속기록 일부를 누락한 사실과 함께,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·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### 3. 위법성 판단

-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일부(개인정보다운로드 사유 등)를 누락한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2항과 제29조,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(이하 '고시') 제8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고,
  -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·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2항과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고시 제11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.

#### Ⅲ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'23. 5. 23.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산하 종합병원은 '23. 6. 7. 의견제출을 통해 보호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시정을 완료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였다.

### Ⅳ. 처분 및 결정

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 산하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 가. 기준금액 산정

피심인 산하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대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총 600만 원을 적용한다.

#### < 과태료 부과기준 2. 개별기준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 : 만 원)		
ਜਦ ਨਸ	다기 납쓰판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
자.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6호	600	1,200	2,400

### 나. 과태료의 가중

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2023. 3. 8.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의결, 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) [별표2] <u>과태료의 가중기준(제8</u>조 관련)에 따라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점,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금액(600만원)의 20%를 가중한다.

### < 과태료의 가중기준(제8조 관련) >

기준	가중사유	비율
위반의 정도	2.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	기준금액의 30% 이내
위반기간	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	기준금액의 50% 이내

#### < 과태료의 가중기준(제8조 관련) -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 >

위반행위	세부기준
	보호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로서,
보호법 시행령	<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>
제63조 별표2 제2호 자목	라. <u>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</u> 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
	바. <u>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</u> 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
	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

### 다. 과태료의 감경

과태료 부과지침 [별표1] <u>과태료의 감경기준(</u>제7조 관련)에 따라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이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,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이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(600만원)의 50%를 감경한다.

#### < 과태료의 감경기준(제7조 관련) >

기준	감경사유	감경비율
조사협조 ·	1.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	기준금액의
자진시정 등	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	50%이내
개 인정보보호	3.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이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	기준금액의
노력정도	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	40%이내

<sup>※</sup>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(과태료의 감경)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은 기준금액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

###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 산하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의 보호법 제23조2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적용하여 총 420만 원을 부과한다.

#### <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>

과태료 처분의 근거			과태료 금액 (단위:만 원)			
위반 조항 처분 조항		기준 금액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 (D=A+B-C)	
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② 제29조(안전조치의무)	제75조제2항제6호	600	120	300	420	

<sup>☞</sup>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, 100분의 20을 감경함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### 2. 개선권고

의료데이터로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민감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었고,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확인된 점,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유출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.

- ①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피심인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9조(안전조치 의무)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,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
- ② 대표자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
- ③ 상기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

### 3. 처분결과의 공표

피심인 산하 종합병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처분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
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						
순번	위반행위를 한 자	위반행위의 내용		행정처분의 니	내용 및 결과	
군 긴	명칭	위반조항	위반조항 위반내용		처분내용	
1		제23조제2항, 제29조	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	2023.7.26.	과태료 부과 420만 원, 개선권고	
2023년 0월 00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						

### V. 결론

피심인 산하 종합병원의 보호법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제2항 및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61조(의견제시 및 개선권고) 제2항, 제75조(과태료)제2항제6호 및 제66조(결과의 공표)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# 2023년 7월 26일

- 위원장 고학수 (서명)
- 부위원장 최 장 혁 (서 명)
- 위 원 강정화 (서명)
- 위 원 고성학 (서명)
- 위 원 백대용 (서명)
- 위 원 서종식 (서명)
- 위 원 이희정 (서명)
- 위 원 지성우 (서명)